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공 시 송 달 서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소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1년간 사업 수행 실적 없음(2차 위반)
3. 처분의 당사자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 표	신고 주소
항만용역업	(주)에스씨엘로지스	윤기철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02, 천마빌딩 610호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종 류	업체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행정처분의 내용	법적근거
항만용역업	(주)에스씨엘로지스	사업수행 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 5. 청문에 관한 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이 예정되어 있어 처분당사자는 청문에 참석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청문 일정 : 2026. 5. 22(금) 16:00 - 17:00
- 청문 장소 :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 청문주재자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박경화 기획계장

종 류	업체명	청문장소	청문일시	청문주재자
항만용역업	(주)에스씨엘로지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 항만물류과	3/22(금) 16:00-17:00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주사 박경화

- 나. 처분당사자는 청문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지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 우리청에 방문하여 청문에 참석한 때에는 우리청에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별지 제13호서식에 「행정절차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합니다.(전화 등 유선으로는 청문 참여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라. 처분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마. 처분당사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 의견제출 방법

- 가.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방문·우편·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 팩스/정보통신망 : 054-245-1592/ seawithha@korea.kr
- 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청에 전화로 통보하여야 합니다(054-245-1538)
- 다. 의견제출서는 당사자 등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등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등이 선임한 대리인이나 우리 청에서 허가 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 라.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7.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나. 당사자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3호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 당사자등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대리인 선임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라. 당사자등이 대표자(대리인)을 해임(변경)하였을 때에도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5호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대리인 해임(변경)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 8. 의견제출 기한 : 2026. 5. 22(금) 18:00까지

## 9.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거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사자 등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휴업·회사사정 등으로 사업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신고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전화054-245-1538, 백창훈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1부.

3.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4.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통지서 1부. 끝.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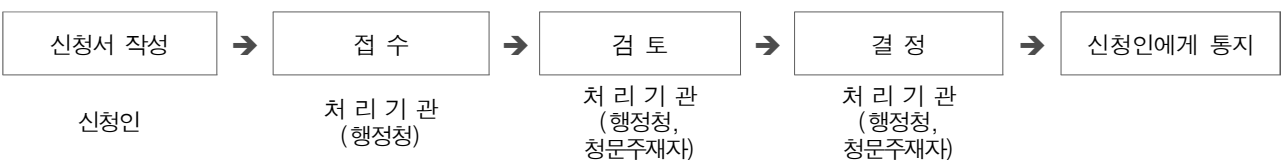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

###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 리 절 차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 ] 대표자 ( [ ] 해임 [ ] 변경) 통지서  
[ ] 대리인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대표(대리)한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 등	성명(명칭)	
		주소	
	해임(변경)된 대표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유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